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2. 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2.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99. 12.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방법 명시(안 제6조)
- 구성방법 : “별표”

[별표]

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제6조제1항)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소각시설	
처리규모	정원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인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1인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부천시장 및 부천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천시의회 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부천시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비고 :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선임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부천시의회 의원 각 4인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방법을 조례를 개정 신설코자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협의체 대표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나? <input type="radio"/>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 대표선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은가? <input type="radio"/> 주민협의체 대표로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해 당사자로 있는 의원은 배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input type="radio"/> 폐기물축진법의 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 신설코자 하는 것임. <input type="radio"/> 효력이 없음 <input type="radio"/>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의결년월일	1999. 12. 24 (제75회)

제출년월일 : 1999. 12. 9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골자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방법 명시
(안 제6조)
- 구성방법 : “별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제7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제6조제1항)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소각시설	
처리규모	정원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인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인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부천시장 및 부천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천시의회 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부천시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비고 :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선임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부천시의회 의원 각 4인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u>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와 같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u></p> <p><u>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u></p> <p><u>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생략)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p>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	--